

## ■ Legal Update ■

### 신외국인투자법 개정안 동향(2012. 8. 30.)

신 미얀마 외국인투자법(이하 '신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이 2012년 7월 4일부터 열린 국회에 상정되었습니다. 당초 미얀마 적극적인 의지에 비추어 7월 말까지 국회를 통과할 것이라고 예상하였으나, 미얀마 내국인 회사(이하 '내국인회사')의 이익보호 등의 이유로 인하여 신외국인투자법은 현재 8월 마지막 주까지도 국회에서 계류 중입니다.

신외국인투자법 개정안의 내용은 미리 공표가 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① 외국인의 최소 초기 투자액을 5백만 달러(또는 이에 상응하는 외화)로 함
- ② 특정 사업에 대하여 외국인의 투자비율을 35%~49%로 제한하고, 농업 부문의 토지할당에 대한 조항을 신설
- ③ 일정한 합작회사의 경우 지분투자를 49%까지만 허용함
- ④ 은행에서 수용가능한 외화로 투자금액 등록 가능
- ⑤ 법인세 면제기간 확대 및 수출제품에 대한 상업세 감면, 수출을 위한 원자재 수입에 관세 감면
- ⑥ 부동산의 사용과 관련하여 최초 50년 임대 이후 10년씩 2회 연장 가능, 민간토지 임대가능
- ⑦ 투자위원회 허가조건부로 외국인의 지분(주식) 양도 가능
- ⑧ 고용관련 비숙련 근로자는 미얀마 현지인만 채용 가능하고, 숙련 근로자를 고용하는 경우 설립 이후 2년까지는 해당 업무 인원의 25%, 4년까지는 50%, 6년까지는 75%를 고용해야 함

8월 24일 KOTRA 양곤무역관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8월 14일 미얀마 상원에서 외국인 투자법 개정(안)이 수정 의결되었고 상하원의 통합회의와 대통령의 재가를 통해 공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만 개정안에서 초기 투자액(5백만 달러) 등 외국인 투자자에 부담이 되는 조항들로 인하여 투자위원회에 내부에서 논쟁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향후 확정된 신외국인투자법이 발표될 때까지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습니다.

향후 특히 위 개정안 중에서 외국인 최소 초기 투자액을 5백만 달러로 한다는 것(1번)은 당초 50만 달러보다 대폭 강화된 것이고 고용과 관련하여서도 숙련 근로자 고용의무의 내용(8번)은 당초에 알려진 개정안보다 채용요건이 강화된 것으로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2번의 '특정 사업'과 3번의 '일정한 합작회사'는 미얀마 내국 사업을 보호하고자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그 범위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다만 당초 개정안에 따르면 아래의 사업들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소수민족들의 문화, 풍습 등을 해하는 사업
- 주변 사람들에게 해롭거나 소란, 환경적으로 해로운 사업
- 국민의 건강에 해로운 사업
- 자원과 자연환경 등에 해로운 사업
- 국가 안에 있는 동물, 수생물, 나무, 꽃, 농산물, 문화유산, 자원 등에 해로울 수 있는 사업
- 국가에 위험, 독이 발생하는 폐기물이 발생할 수 있는 사업
- 국제적으로 협의된 위험한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공장 또는 제품을 사용한 사업의 경우, 투자한 사업이 국가와 국민에게 도움이 될 경우 정부와 협의를 통해 승인될 수 있음

뿐만 아니라 신외국인투자법의 적용 시기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가 없는데, 기존 외국인투자법에 대한 신뢰를 감안하여 부분적으로 변경된 법률의 적용 시기를 늦출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미얀마에 대한 투자를 계획하고 있다면 외국인 투자자에게 불리할 수도 있는 자본금 증액 규정이나 투자제한 규정이 적용되기 이전에 법인 설립을 서두르는 것도 고려해 볼 만 합니다.